

1. 개정이유

올초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영난이 악화된 바, 피규제자 부담 완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나.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정보 표출 장치 설치 근거 추가(안 별표 1의2)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에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표출하는 장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 6의2)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실시하지

양도록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9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측정하여야”를 “측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12호”를 “제12호의2”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 중 “있어야 한다”를 “있어야 하며, 지하역사의 경우에는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자가 많은 지점에 별도의 표출 장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역사 내 공기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6의2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험기관은 의뢰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와 방출시험 결과 등을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9. 시험기관은 해당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 또

는 수입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및 면제인정 등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건축자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 축 자 재	상 호(명 칭)	
	소재지	
	대 상 건 축 자 재 [] 접착제, [] 페인트, [] 실란트(sealant), [] 퍼티(putty), [] 벽지, [] 바닥재, [] 목질판상제품	
	대 상 제 품	확인시험(상품명) 면제인정(상품명)

별지 제2호의3서식 앞쪽 제1호 중 대상건축자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 상 건 축 자 재 [] 접착제, [] 페인트, [] 실란트(sealant), [] 퍼티(putty), [] 벽지, [] 바닥재, [] 목질판상제품

별지 제2호의4서식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 상 건 축 자 재: [] 접착제, [] 페인트, [] 실란트, [] 퍼티, [] 벽지, [] 바닥재, [] 목질판상제품

별지 제2호의5서식 제1호 및 제2호 표 중의 “기타”를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7서식 제1호 표 중의 “기타”를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68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역사 공기질 자동측정 결과 표출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역사 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표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시 공 자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공동주택 현황	공급세대	세대별 규모				
			m ²	m ²	m ²	m ²	m ²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측 정 자	상 호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단위: $\mu\text{g}/\text{m}^3$ 또는 Bq/m^3)

항 목	측정 일시 (시간)	측정 지점 (동-호수)	거실 방향	벤젠	톨루엔	폼알데 하이드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시간 또는 분)
권고기준	-	-	-	30 이하	1,000 이하	210 이하	36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148 이하
1지점	(:)	(-)								밀폐
										환기
										()
2지점	(:)	(-)								밀폐
										환기
										()
3지점	(:)	(-)								밀폐
										환기
										()
...										밀폐
										환기
										()
평 균										밀폐
										환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공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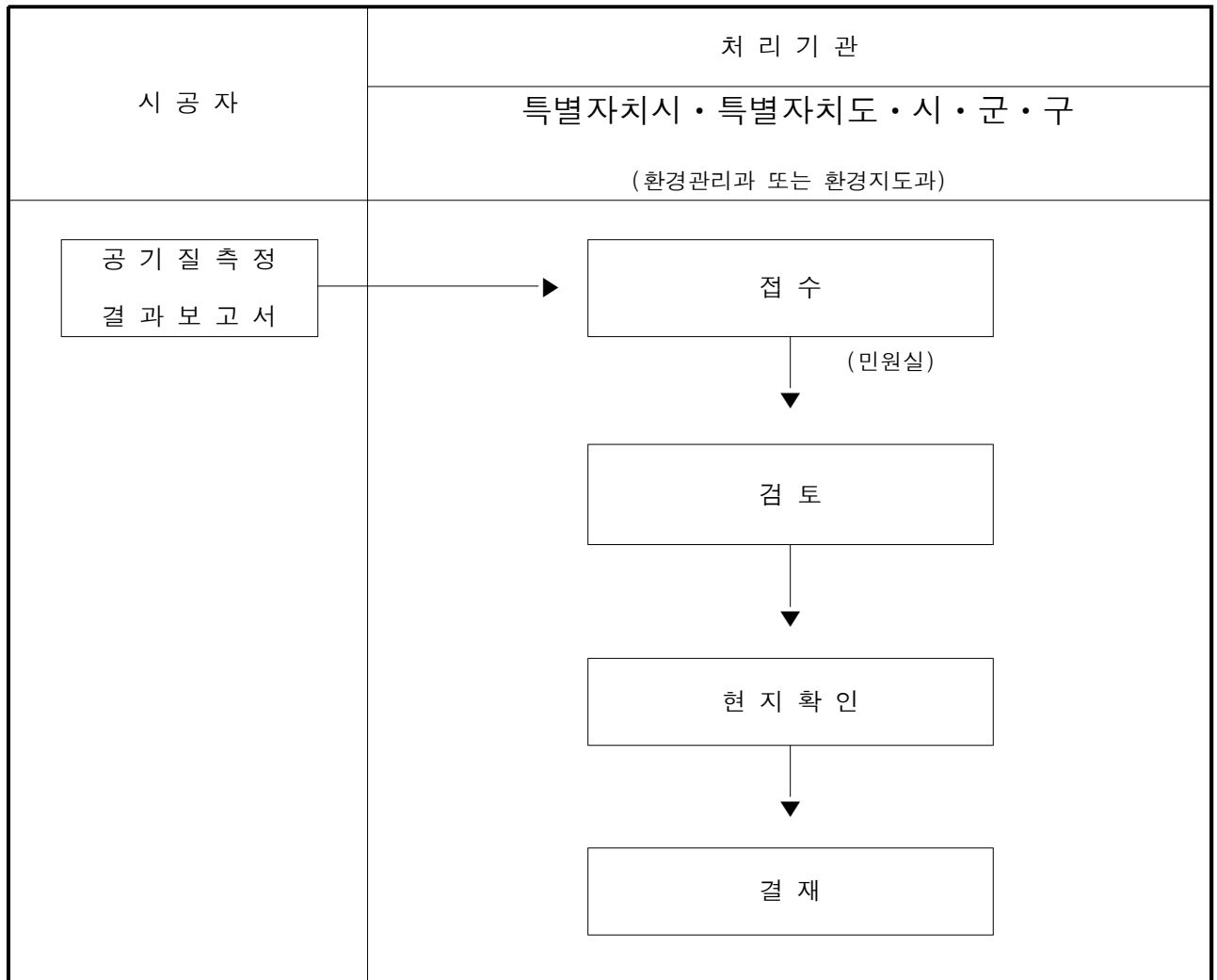
※ 첨부서류: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요령

- 거실방향은 8방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남동향, 남남향)
-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란의 라돈 항목은 해당 항목을 측정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밀폐' 란에는 밀폐 조건에서의 측정값을 작성합니다.
 - '환기' 란에는 환기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환기설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가동 조건에서 측정한 값을 작성합니다.
 - 라돈 항목의 괄호 안에는 밀폐 이후 환기설비를 가동할 때부터 라돈의 측정값이 권고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작성합니다. 다만, 밀폐 조건에서 측정한 값이 권고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평균 시간은 밀폐 조건에서의 측정값이 권고기준보다 높은 지점들의 평균값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 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u>부착하여야</u> 하는 건축자재의 표 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② (생략)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 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 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 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u>측정하여야</u>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 ----- ----- <u>붙여야</u> ----- -----.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측정해야</u> -----. ④ ----- ----- ----- ----- ----- 다만,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u>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u> <u>를 조정할 수 있다.</u> 1. (현행과 같음)
1. (생략)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생략) ⑤ (생략)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u>환경부령이</u>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4. (생략)	2. ----- 제12호의2----- -----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 ----- “<u>환경부령으로</u> ----- -----. 1. ~ 4. (현행과 같음)
---	---